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구오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등록번호]:20231256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2023.08.31.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2025.12.2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7, 1 동 304 호(보람동, 리버파크빌)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1644-9505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식회사 구오컴퍼니	영칼로리포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7, 1동 304호(보람동, 리버피크닉)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5.03.17.	2025. 03. 21.	이형한	1644-9505	-
	법인등록번호	164711-0015390	사업자등록번호	324-86-0360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이사)	(주)구오컴퍼니/이형한	영칼로리포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7, 1동 304호 (보람동, 리버피크닉)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형한	1644-9505	-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특수관계인 (감사)	(주)구오컴퍼니/이희봉	영칼로리포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7, 1동 304호 (보람동, 리버피크닉)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형한	1644-950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영칼로리포케본점	영칼로리포케	2025.03.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316 번길 37-3, 지상 1 층 (문지동)	이형한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영칼로리포케	-
상 호	영칼로리포케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영업표지)		등록번호: (29 류)40-2391928-0000 등록번호: (35 류)40-2391927-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2 년	125,069	75,773	49,296	530,191	47,865	54,019
2023 년	143,360	114,975	28,384	647,302	60,327	64,088

2024년	158,677	97,119	61,558	799,954	76,555	82,173
-------	---------	--------	--------	---------	--------	--------

*상기 표의 정보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정보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형한	대표	2021.09.23.~현재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희봉	감사	2025.03.21.~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16


*상기 표의 정보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정보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인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29 류 35 류	등록일: 2025.07.21.	(29)40-2391928-0000 (35)40-2391927-0000	이형한	2035.07.22.

■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본사대표: 이형한)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영칼로리포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개점일): 2023. 08. 31

[직영점 오픈일]: 2021년 09월 23일

2. [영칼로리포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영칼로리포케 본점	영칼로리포케	이형한	2023.08.31.~ 2025.03.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316번 길 37-3, 지상1층(문지동)
주식회사 구오컴퍼니	영칼로리포케	이형한	2023.03.21.~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37, 1 동 304호(보람동, 리버피크닉)

3. [영칼로리포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영칼로리포케	기타외식	샐러드 포케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	-	1	8	7	1	20	18	2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1	-	1	7	6	1	9	8	1
울산	-	-	-	-	-	-	-	-	-

세종	-	-	-	1	1	-	2	2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4	3	1
충남	-	-	-	-	-	-	3	3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0	7	0	0	0	7
2024	7	11	0	0	0	1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6. [영칼로리포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영칼로리포케]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영칼로리포케] 가맹사업자가 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산출대상 가맹 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8	632,689	26,098	1,344,911	68,280	332,788	12,607	11개 산정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2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8	684,900	32,599	1,344,911	68,280	332,788	18,303	6개 산정
울산	-	-	-	-	-	-	-	-
세종	2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3	-	-	-	-	-	-	-
충남	3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가맹점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 가맹점사업자(7개)는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표의 매출액 정보는 가맹점18개 중 11개 가맹점매출액의 정보입니다.

■가맹점매출액 중 6개월 이상 12개우월 미만 가맹점(4개)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1달 중 15일 이상을 영업한 경우 1개월로 환산하였습니다.

■지역별 가맹점매출액 정보 중, 산정 가능한 가맹점이 지역별로 2개 이하인 경우 개별정보보호를 위해 지역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영칼로리포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8	257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 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442	-	-	-
광고비	-	-	4,442	-	-	-
판촉비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전화번호	주소
신한은행	대덕테크노밸리금융센터점	042-936-2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50

항 목	내 용
신한 은행 계좌가 있는	영업점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지점)방문 → ③ 가맹금예 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① 인터넷뱅킹 접속 → ② banking 로그인 → ④ 부가서비스/가맹금인터넷예치

사업자	뱅킹 이용시	서비스/가맹점사업자 클릭 ⑤ 가맹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⑥ 가맹본부 확인 → ⑦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⑧ 가맹금예치 완료
신한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 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사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구오컴퍼니(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영칼로리포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귀하와 협의한 별도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설비 등의 종류 및 사양, 점포의 구조 및 노후도 등 내·외부 특성,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맹비, 교육비

구분	금액(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예치대상 여부
가맹비	1,100 만원	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 제 10 조에 해당하는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예치
교육비	550 만원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1인 기준)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후 교육실시(1차 기본교육:10일 이내, 2차 본교육:협의) ▶교육 및 일정 등 협의 가능 ▶가맹점운영매뉴얼 및 기타 제반 교육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 후 조절 가능	예치

가맹금은 개점 전 지원·제공 및 교육의 대가로 모두 소모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조건: 영업개시 이전에 가맹사업법 제 10 조가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될 수 없는 사유

①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

②교육비: 교육이 시작된 경우

2) 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자제외)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당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구분	금액(VAT 없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지급기한	예치대상 여부
계약이행 보증금	500 만원	가맹금 미지급,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계약체결 시	예치

■ 계약이행보증금은 당사와 협의 하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 및 담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설정 및 증권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귀하의 계약 이행 및 위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맹계약 상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사는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이를 즉시 총당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 포함)
가맹비	1,100 만원
교육비	550 만원
보증금(VAT없음)	500 만원
합계	2,150 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66㎡기준, 20평)	면적 3.3㎡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

			금액			
총계	-	7,450	372	-	-	매장 상황 및 가맹점사업자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협력업체)	3,960	198	오픈 2주 전까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주방설비 및 주방집기	(협력업체)	1,650	82			-
가구	(협력업체)	440	22			-
부대장비	업체자율	330	16			-
음료장비	업체자율	330	16			-
초도물품	가맹본부 외7	440	22			-
POS 등	(협력업체)	300	15			별도계약
별도금액	자체조달	간판, 어닝, 철거, 샷시, cctv, 외부테라스, 컴퓨터, 각종 인허가비용 등, 홍보물, 철거, 외부공사, 화장실, 정화조, 냉난방기, 소방설비,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음향, 영상, 가전제품 및 소품 등				매장 상황 및 가맹점사업자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측 후 귀하에게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점포입지 및 지역, 점포규모, 점포구조,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 등의 사유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기 금액 또는 지급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점을 위한 필수설비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공사, 인테리어 등 및 필수설비를 당사의 승인 하에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시공 시작 3일 전까지 설계도면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하고, 귀하는 시공 매뉴얼, 도면점검 및 디자인설계 노하우 제공 대가로 **3.3 m² 당 디자인 등 제공비(매뉴얼·디자인 설계 노하우)[44만원(VAT 포함)]**를 시공 시작 전까지 당사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설비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당사가 귀하와 별도 협의 후 소정의 기획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 표의 주방설비/기기/집기 비용은 당사가 권장하는 기본 설치 사양에 대한 금액으로서, 점포 면적의 가감에 따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의 면적당 금액은 이 점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 선정 시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등 파악 * 귀하의 책임 하에 최적의 점포 입지를 도출 *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즉,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은 가맹희망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맹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점포 개발 업무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상권분석 자료는 점포입지 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로서 예상매출이나 수익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p>최소 실면적 66 m² 이상 (단,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 후 오픈 가능)</p>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계약·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p>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교육을 이수한 자, 만 19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p>
종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인 경우 점주 교육과정 수료, * 그 외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음 	<p>만 18세 이상, 보건증 소지자, 가맹점사업자의 권한으로 채용할 것</p>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가맹점 등 분납 제도

당사는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가맹금 및 기타비용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u>가맹점매출액</u> (부가세포함)의 2.2%	익월 10일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POS 등 사용료	(협력업체)	월66,000	POS업체와 별도협의	시스템 사용 및 관리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보수교육/특별 교육	가맹본부	별도협의	지정일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가맹점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POS상의 매출액(카드+현금)+배달매출 등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

■로열티: 필수품목 자점매입 적발 시 매출액의 4.5%

■상호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정보의 실시간 활용 및 가맹점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필수적으로 POS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PO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당 평균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차액가맹금은 추정금액이며,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무 착오 등으로 금액이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류유통과정의 비용 및 보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을 점검하고 레시피 등 영업매뉴얼 준수여부 및 운영 상태, 대 고객 서비스 제공 상태, 매장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점검/평가 결과 보수교육(개점 후 특별/기타 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직원이 운영에 대한 점검 기타 가맹점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직원(Supervisor)이 가맹점으로 방문하였을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향후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로열티, 광고비, 판촉비, 교육비 등 가맹점사업자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들의 조건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9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전에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기존 가맹계약 상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영업표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

지 못하거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경영적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합니다. 귀하는 영업표지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기존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가맹점의 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교체·교환·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전 영업표지의 철거 및 신규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물품대금, 환경개선 등), 계약 상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 전 잔존 채무를 당사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 후 승인 및 지급 완료가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아래 표의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가맹본부의 운영방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VAT 포함)

구분	신규 가맹계약	구분	양수 가맹계약
가맹비	1,100 만원	개점활동 지원비	550 만원
교육비	550 만원	교육비	550 만원
계약이행보증금(VAT없음)	300 만원	계약이행보증금(VAT 없음)	300 만원
합계	1,950 만원	합계	1,400 만원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귀하는 [영칼로리포케]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영업표지(간판, 로고가 들어간 일체의 시설집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 및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구글, 티맵,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내 영칼로리포케 XXX 점의 표지, 지역정보, 전화번호 등록, 홍보사이트(블로그, SNS 게시물 등)를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및 원상회복의 비용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귀하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물품공급대금, 위약금 등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채무를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정산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운영매뉴얼, 기타 당사가 제공한 영업관련 자산 일체) 및 당사의 소유물(대여) 또는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 및 비용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물품 및 관련설비 등에 대해 당사에 인수·반품·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훼손, 유통기한,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사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가맹계약의 종료 이후에는 귀하의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영업지역에 대한 권리는 모두 가맹본사에게 이전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영칼로리포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공급업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가 공급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하자, A/S 등의 사항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귀하가 자점매입한 물품이 당사의 공급제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시정요구 및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영칼로리포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당사가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

하는 지정된 상품(메뉴)·용역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귀하가 지정된 상품(메뉴)·용역 외의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 시 귀하에게 안내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기타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귀하에게 기존 상품(메뉴)·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 등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은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타 브랜드 가맹점,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제3자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		

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별 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가격의 통보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샐러드 포케 전문점 등 기타 영칼로리포케의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영칼로리포케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배달상권 제외)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점포: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상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를 원칙으로 함 (해당 지역 내 특수상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배달상권 제외)	

■ 특수상권 및 대규모점포 등: 강남역/홍대/명동/동성로/해운대 등에 준하는 대형상권,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영화관, 푸드코트,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등 집합매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매장(이상 특수상권), 대규모점포 내의 가맹점 및 기타 가맹계약 당사자가 영업장소의 계속성에 대하여 보장할 수

없는 곳은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설정한 영업지역과 상관 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영칼로리포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86.38%	13.6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 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및 갱신 기간

- ① [영칼로리포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 ②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귀하의 영업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가맹계약서 제30조]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②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3)의 사유 없이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맹계약서 제30조 제3항]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1조 제3항]

1. "을"이 본 가맹계약서 제25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을"이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기획관리비 등 "갑"과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을"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거나, 가맹점운영관리규정 등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성범죄 관련 범죄 등, 폭행 및 욕설 등)
8. "을"이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맹계약서 제31조 제5항, 제6항]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점포의 영업중단, 해지 및 종료 등 기타 해당 점포에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대규모점포 및 특수상권,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 기타 가맹계약 당사자가 영업장소의 계속성에 대하여 보장할 수 없는 곳"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해지 및 종료 등 기타의 사유로 퇴점조치 되는 경우에는 "갑"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당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즉시 해지 되오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1조 제4항]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3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개월 이내) → '양도의 확정'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매각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양도의 확정' 전까지 양도인은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채무(물품대금·로열티 등의 미납금) 및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을 가맹본부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당사와 동종의 직영점 또는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기타 양수인이 [영칼로리포케]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아래 표의 제한기간 동안 귀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종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약정한 계약기간 및 약정한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샐러드 포케 전문점 등 기타 영칼로리포케의 메뉴와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칼로리포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1:00 (권장, 자율원칙)	최소영업일: 주6일이상 (단, 특수상권은 해당상권 내 영업방침을 따름)	*점포 영업거점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 휴무 시 운영파트와 협의하고 사전에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3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속하여 3 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별도 협의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경영지도요원, 훈련요원, 모니터요원 등, 이하 통칭하여 Supervisor이라 함)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서비스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① 당사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효율적인 점포운동을 위해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운영관리규정(운영매뉴얼 포함)”을 두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Supervisor가 가맹점을 점검한 후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 영업방침 등을 가맹점이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는 시정요구 또는 경고장 발부, 교육입소 명령 또는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 가맹점에 안분 또는 매출 액 비례)	광고 진행 시 별도 협의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50%	50% (전체 가맹점에 안분 또는 매출 액 비례)	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제휴 및 할 인	할인카드·멤버십 등 제휴서비스, 배달중 개플랫폼·카드사 등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월 할인 예상금액 제시→자료 제 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맹점부담 액 송금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 하기 전에 광고의 경우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 이상, 판촉의 경우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별도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1)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당사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은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 영업비밀의 범위	무단유출 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 매뉴얼 등 당사가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 일체의 영업관련 자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2조의 계약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1일당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해지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평균 월 매출액)의 10%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15일 이상 남은 달은 1개월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개월 15일이 남은 잔여 계약기간인 경우 11개월로 계산)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지 않고 가맹점을 폐업처리하거나, 가맹계약서 제7조(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영칼로리포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점포를 양도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영업의 표준화, 상품판매 및 판매가격)를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영업노하우를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필수품목)을 자점매입 또는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자점매입하여 상품(메뉴)으로 판매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3,000만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오십만원(500,000)씩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19조 제4항(산출자료 미제공), 제20조 제3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26조 제1항 (영업표준화), 제47조(보고의무), 제37조(회계자료 통지의무), 제25조 제1항 제7호(매출 허위 보고 및 누락) 및 동조 제19호(임의 영업중단)를 각 위반한 경우 최초 위반 시 시정권고, 이후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 ⑪ 가맹계약기간 전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⑫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면제·무상지원 받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⑬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점포사정에 따라 상이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일 (정보공개서의 경우, 변호사or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IV-1-1)~4)참고
사업설명·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1일	
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20~30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5일	
영업기기/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주방기기 입고 -그릇 등 주방집기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식자재, 비품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기타 시장상황 등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5 년으로 한다) ②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①간판교체비용 ②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완료 후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 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장비·집기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 하지 않음
협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의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점포환경 개선 시행 ▪ 가맹점사업자의 신청 → 가맹본부의 검토 및 승인(서면 회신) → 점포환경 개선 시행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계약이행, 표준화,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에 서면,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개선방안 지도 및 시정 권고 →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계약이행, 표준화,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본사의 사정에 따라 경영활동의 자문에 관한 사항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영칼로리포케]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영칼로리포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 (지정 교육장)	7일(1일:7시간) (상호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550만원 (VAT 포함)	필수
	개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양수 교육(양도양 수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필수
특별/보수 교육 (개점 후)	점주요청, 신메뉴 조리방법 등, QSC미달 시 등	집체교육	특별: 1일(3~6시간) 보수: 1일(3시간)	특별: 실비 보수: 11만원 (VAT 포함) 단, 추가 실비 발생 시에는 협의.	필수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2. 교육 · 훈련의 주체

신규 교육에 대한 개점 전 교육비는 가맹계약 체결 후 교육신청과 동시에 가맹본부에 납부(예치) 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 실시하는 신규 교육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 및 실운영자가 모두 반드시 입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사자가 당사자, 실운영자 외 직원도 같이 받게 되면 인원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 귀하에게 특별교육/기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기타 교육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반드시 입소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교육비 입소 2일 전까지 지정계좌로 납부).

가맹계약 당사자의 훈련요원 파견요청 교육은 당사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직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당사가 신메뉴 개발 시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신메뉴 또는 신서비스에 대한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No	지역	명칭	소재지
1	대전	영칼로리포케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316번길 37-3, 지상1층(문지동)
2	충북	청주강서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2, 1층 103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1개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41,28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평균매출액 산정은 해당 직영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직영점(1개)의 경우 1년치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별첨01] 필수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02] 메뉴

번호	메뉴	권장가격	번호	메뉴	권장가격
1	수비드 닭다리살 포케	11,900	18	수비드 닭가슴살 포케	10,900
2	곤부지메 연어 포케	13,900	19	하루 3끼 식단 KIT	26,500
3	수비드 목살 포케	11,900	20	부채살 도시락	12,500
4	K바베큐 포케	11,900	21	탈라피아 도시락	11,500
5	우삼겹 포케	12,900	22	목살 도시락	11,500
6	오리훈제 포케	11,900	23	닭가슴살 도시락	9,500
7	수비드 닭다리살 포케	11,900	24	칼로리 걱정 NO 치킨 토마토 파스타	10,500
8	칼로리 걱정 NO 파스타(전용드레싱)	8,500	25	수박 쥬스	4,500
9	떡갈비 샌드위치	7,000	26	오곡 프로틴 프라페	5,300
10	수비드 닭가슴살 할라피뇨 샌드위치	6,800	27	초콜릿 바나나 프로틴 프라페	5,300
11	덴더 샌드위치	6,800	28	바닐라 프로틴 프라페	5,300
12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	6,800	29	제로 망고	4,900
13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6,500	30	제로 아이스티	4,900
14	단호박 샌드위치	6,500	31	아메리카노	3,800
15	오레오 홀릭	6,900	32	카페라떼	4,300
16	스윗 허니 그릭볼	6,900	33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4,300
17	그릭 요거트 + 그레놀라	5,900	34	디카페인 라떼	4,800
			35	제로콜라	2,000

■가맹본부는 위 메뉴에 대한 변동사항(신메뉴 추가, 변경, 삭제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메뉴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해당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별첨03] 기타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04]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금예치신청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